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21.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9월 6일

나. 발 의 자: 김지연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3년 9월 14일

라. 상정일자: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3. 9. 1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지연 의원)

가. 제안이유

○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신설 및 추가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어린이집·유치원·아동복지시설 경계로부터 3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3호)

○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10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조례안은

-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의 확대 및 추가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집행부의 금연구역 지정의 확대 및 추가에 따른 준비를 위해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제1항제3호에서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어린이집·유치원·아동복지시설의 경계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을 신설함.
-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제1항제10호에서는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연면적 5,000㎡이상의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도로’를 추가함.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를 30m 이내까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경계로부터 30m이내 구역” 및 “연면적 5,000㎡이상의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함.
- 현행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30미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2023년 7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10미

- 터는 필히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조항이며,
- 본 조례안에서 30미터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써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 한편, “아동복지시설 경계로부터 30m이내 구역” 및 “연면적 5,000㎡이상의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사항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본질로 하는 기본권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 뿐만 아니라 생명권을 본질로 하는 기본권이어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시되는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하였으며,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당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가 비록 흡연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합헌 판결 내린 바 있음.
 - 다만,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하되 흡연권 또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기본권인바, 금연구역의 확대로 인해 흡연자의 권리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
----------	-----

발의연월일: 2023. 9. .

발 의 자: 김지연, 신흥식, 임현호
우경란, 양송이 의원(5인)

1. 제안이유

2022년 한해 동안 흡연과 관련된 민원은 감염병관리과 전체 민원 404건 중 202건으로 50%를 차지하는 높은 빈도의 민원임. 심지어 이 중 유치원 등 어린이 및 아동 시설 관련 흡연 민원이 20여건으로 흡연 민원의 10%에 달함.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최근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 내년 8월 시행 예정임.

이에 선제적으로 어린이 시설과 아동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관내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금연구역의 지정 등(안 제5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9. 11. ~ 9.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중전의 제9호) 본문 중 “대지”를 “대지 또는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써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u>10.</u> · <u>11.</u> (생략)</p> <p>② ~ ④ (생략)</p>	<p><u>로써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서 삭제></u></p> <p><u>11.</u> · <u>12.</u> (현행 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